



질병관리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 일부 개정 발령 알림

1. 관련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
2.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예방접종 업무를 하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개정내용

-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접종대상자에게 예진표를 '작성하도록 권유'하도록 한 것을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, 접종대상자는 예진표를 '작성하도록 함'으로 변경

나. 시행일: 2021.2.21일부터 시행

- 붙임 1.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(최종)_제2021-2호.
2.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(개정전문). 끝.

질병관리청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 대한중소병원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,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, 대한가정의학과 의사협회장,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,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,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, 대한아동병원협회장,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장

보건연구사	김은성	보건연구관	이지아	예방접종관리	전결 2021.2.22.
				과장	홍정익
협조자					
시행	예방접종관리과-975	(2021. 2. 22.)	접수		
우 28160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국립중앙인체 / http://kdca.go.kr 자원은행				
전화번호	043-719-8372	팩스번호	043-719-8379	/ cairu00@korea.kr	/ 대국민 공개